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승알앤에이(이하 "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1.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구성)

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3.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감사부설기구 책임자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

1. 위원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운영

제5조(개최)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48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사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 9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권한과 의무

제 10조(권한)

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②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④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⑤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⑥ 이사의 보고 수령
 - ⑦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⑧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⑨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⑪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⑫ 외부감사인의 선정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②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③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

1.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독립의 원칙)

1.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의견표명)

1.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①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②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③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 및 집행임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실시

제14조 (감사의 유형)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정보 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16조(감사의 실시)

1.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3.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① 거래기록의 신뢰성

- ②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 ③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 ④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 ⑤ 회계방침의 계속성
 - ⑥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5.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7조(내부회계관리제도)

1.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 ②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 ③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 ④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 ⑥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⑦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⑧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 ⑩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 ⑪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 ⑫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 ⑬ 보고서 일자
- ⑭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 ⑮ 기타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다. 권고사항

제18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 ①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 ②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 ③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 ④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⑤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 ⑥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 ⑦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⑧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19조(부정행위 등 발생시 대응)

1. 위원회는 기업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사회적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 등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20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③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②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5.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23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